##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9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 김수흥・안호영・윤준병

허 영·한병도·송영길

김유덕 • 박재호 • 노웅래

김회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효과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6장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장을 제17장으로 하고, 제16장(제167조의2 및 제167조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장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제167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의원은 그 지위 및 직무상 정보를 사적(私的) 이해관계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일반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③ 의원은 자신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공기업과 일반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사적(私的) 이해관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그 가족이 소속된 기관·단체, 의원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당

선 전의 업무활동 관계인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제167조의3(표결 등에 대한 회피의무) ① 의원은 제29조에 따른 겸직사항, 제29조의2에 따른 영리행위 또는 제167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회피하여야 한 다.
  -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피의무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발언 또는 질의·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회의에서는 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각 간사가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67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의원은 그 지위 및 직무상 정보를 사적(私的) 이해관계 또 는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과 일반경쟁이 아 닌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지역선거구 를 관할하는 기초・광역지방자 치단체 및 그 지방공기업과 일 반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사적(私的) 이해관 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그 가족이 소속된 기관・ 단체, 의원 또는 그 가족이 국 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당선 전의업무활동 관계인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

<신 설>

다.

- 제167조의3(표결 등에 대한 회피의무) ① 의원은 제29조에 따른 경직 사항, 제29조의2에 따른 영리행위 또는 제167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회피하여야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회 피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피의무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발언 또는 질의·질문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회의에서는 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각 간사가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